

#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대비표

칸서스자산운용(주)

## 1. 투자신탁의 명칭

- 칸서스 하베스트 적립식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 2. 효력발생일

- 2013.12.09

## 3. 변경사유

- 부책임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으로 인한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운용전문인력,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 비용의 변경, 재무정보,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운용실적,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등 통계자료 갱신
- 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등 반영
-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양식 추가

## 4. 신탁계약서 변경 내용

현	행	변	경
<p><b>제37조(수익자총회)</b> ①~⑤(생략)</p> <p>⑥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p> <p>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b>제37조(수익자총회)</b> ①~⑤(현행과 같음)</p> <p>⑥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p> <p>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p> <p>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p> <p>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p>		

<p>⑧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 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 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 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 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⑨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 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 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6항을 적용함에 있 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 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 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 의 과반수”로 한다.</p> <p>⑩(생략)</p> <p><b>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b></p> <p>①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 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 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당해 집합투자업자에 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 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 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 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p>	<p>어 있을 것</p> <p>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일 것</p> <p>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p> <p>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 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 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6항에 따른 수 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 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 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⑨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제7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으로 하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 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분 다.</p> <p>⑩(현행과 같음)</p> <p><b>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b></p> <p>①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p> <p>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p>
--	---

<p>②~④(생략)</p> <p><b>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b></p> <p>①집합투자업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li> <li>2. 신탁업자의 변경(제44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li> <li>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li> <li>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li> </ol> <p>②~④(생략)</p> <p><b>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b></p> <p>①~③(생략)</p> <p>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p><b>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b></p> <p>①(생략)</p> <p>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p>	<p>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p> <p>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p> <p>②~④(현행과 같음)</p> <p><b>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b></p> <p>①집합투자업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li> <li>2. 신탁업자의 변경(제44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li> <li>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li> <li>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li> </ol> <p>②~④(현행과 같음)</p> <p><b>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b></p> <p>①~③(현행과 같음)</p> <p>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p><b>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b></p> <p>①(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p>
--	---

<p>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p> <p>①~④(생략)</p> <p>⑤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li> <li>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li> </ol> <p>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계약기간의 종료·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24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운용보고서”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로 본다.</p> <p>⑦~⑬(생략)</p>	<p>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p> <p>①~④(현행과 같음)</p> <p>⑤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li> <li>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li> </ol> <p>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계약기간의 종료·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24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li> <li>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li> </ol> <p>⑦~⑬(현행과 같음)</p>
--	--

## 5.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2.10.12기준	2013.10.12기준
4. 집합투자업자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타워 9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9층

5.투자운용인력 가.운용전문인력	2012.10.12기준 부책임용인력 : 최승용 주식운용본부장	2013.10.12기준 부책임용인력 : 김관오 주식운용2팀장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3년간 변경 내역	해당사항 없음	구분 부책임용전문인력	성명 최승용	운용기간 2012.08 ~ 2013.04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집합투자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지급비율(연간, %)					지급비율(연간, %)						
	구분	K1 Class	A Class	B Class	C Class	I Class	구분	K Class	A Class	B Class	C Class	I Class
	집합투자업자 보수	연 0.654%					집합투자업자 보수	연 0.654%				
	판매회사 보수	연 1.50%	연 0.9%~0.3%	연 0.9%~0.5%	연 0.3%~0.1%	없음	판매회사 보수	연 1.5%~1.0%	연 0.9%~0.3%	연 0.9%~0.5%	연 0.3%~0.1%	없음
	신탁업자 보수	연 0.03%					신탁업자 보수	연 0.03%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0.016%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0.016%				
	기타비용	연 0.003%					기타비용	연 0.004%				
	총 보수. 비용	연 2.203%	연 1.603%~1.003%	연 1.603%~1.203%	연 1.003%~0.803%	연 0.703%	총 보수. 비용	연 2.204%~1.704%	연 1.604%~1.004%	연 1.604%~1.204%	연 1.004%~0.804%	연 0.704%
증권거래비용	연 0.669%					증권거래비용	연 0.354%					
<p>※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2.10.12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증권거래비용은 2012.10.12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p>						<p>※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3.10.12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증권거래비용은 2013.10.12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p>						

	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발행분담금                      부담주체가 2013.08.29기준으로 투자신탁에서 집합투자업자로 변경됩니다.									
총보수·비용 비율	Class A	연 1.603%	Class B	연 1.603%	Class C	연 1.003%	Class K1	연 2.203%	Class I	연 0.703%	Class A	연 1.604%	Class B	연 1.604%	Class C	연 1.004%	Class K1	연 2.204%	Class I	연 0.704%
	Class A1	연 1.503%	Class B1	연 1.503%	Class C1	연 0.953%	Class K2	연 2.078%			Class A1	연 1.504%	Class B1	연 1.504%	Class C1	연 0.954%	Class K2	연 2.079%		
	Class A2	연 1.403%	Class B2	연 1.403%	Class C2	연 0.903%	Class K3	연 1.953%			Class A2	연 1.404%	Class B2	연 1.404%	Class C2	연 0.904%	Class K3	연 1.954%		
	Class A3	연 1.203%	Class B3	연 1.303%	Class C3	연 0.853%	Class K4	연 1.828%			Class A3	연 1.204%	Class B3	연 1.304%	Class C3	연 0.854%	Class K4	연 1.829%		
	Class A4	연 1.003%	Class B4	연 1.203%	Class C4	연 0.803%	Class K5	연 1.703%			Class A4	연 1.004%	Class B4	연 1.204%	Class C4	연 0.804%	Class K5	연 1.704%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구분	1년	3년	5년	10년	구분	1년	3년	5년	10년	구분	1년	3년	5년	10년	구분	1년	3년	5년	10년
	K1 Class	225	712	1,248	2,840	K1 Class	226	712	1,248	2,841	K1 Class	226	712	1,248	2,841	K1 Class	226	712	1,248	2,841
	A Class	261	612	998	2,145	A Class	262	612	998	2,146	A Class	262	612	998	2,146	A Class	262	612	998	2,146
	B Class	163	516	906	2,062	B Class	164	517	906	2,063	B Class	164	517	906	2,063	B Class	164	517	906	2,063
	C Class	102	323	566	1,289	C Class	102	323	566	1,289	C Class	102	323	566	1,289	C Class	102	323	566	1,289
	I Class	72	227	398	907	I Class	72	227	399	907	I Class	72	227	399	907	I Class	72	227	399	907
14. 이익 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									

	<p>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p>	<p>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2012.10.12기준	2013.10.12기준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2012.10.12기준	2013.10.12기준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2012.10.12기준	2013.10.12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2012.10.12기준	2013.10.12기준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2012.10.12기준	2013.10.12기준
라. 운용자산 규모	2012.10.12기준	2013.10.12기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p>⑥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p>	<p>⑥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p>

	<p>⑧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습니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p> <p>⑨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합니다.</p> <p>⑩(생략)</p>	<p>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li> <li>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li> <li>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일 것</li> <li>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li> </ol> <p>⑪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습니다)는 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p> <p>⑫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p> <p>⑬(현행과 같음)</p> <p>⑭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p>
--	---	--



		<p>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p>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p>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탁계약서 제37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li> <li>2. 신탁업자의 변경(신탁계약서 제44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li> <li>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li> <li>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li> </ol>	<p>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탁계약서 제37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li> <li>2. 신탁업자의 변경(신탁계약서 제44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li> <li>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li> <li>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li> </ol>
(4) 반대매수 청구권	<p>①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당해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①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li> <li>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li> </ol>

<p>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p>	<p>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li> <li>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li> <li>3.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li> <li>4.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li> </ol> <p>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li> <li>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li> <li>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li> <li>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li> </ol> <p>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p> <p>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신탁계약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p>	<p>가. 의무해지</p> <p>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li> <li>(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li> <li>(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li> <li>(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li> </ol> <p>나. 임의해지</p> <p>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3) 및 (4)의 사유로 임의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신탁계약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li> <li>(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li> <li>(3)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li> <li>(4)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li> </ol>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p> <p>가. 정기보고서</p> <p>(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p> <p><input type="checkbox"/> 영업보고서</p>	<p>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li> <li>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li> <li>3.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이 기재된 서류</li> <li>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li> </ol>	<p>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li> <li>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li> <li>3.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li> <li>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li> </ol>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p>	<p>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p>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p> <p>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p>	<p>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p>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p> <p>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p>
<p>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p>	<p>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p> <p>1. 법 제87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p> <p>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p> <p>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p> <p>③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본문에 따른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본문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p>	<p>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시 방법 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p> <p>1.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p> <p>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p> <p>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p> <p>③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p>